

접 수	의안과 - (2013. 02. 14.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청문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사 청문법 개정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3년 02월 14일

청 원 인

성 명 : 이환인

주 소 :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이환인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성명 : 이환인
건명	공정성 및 전문성 자질평가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사 청문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13년 02월 14일
<p>소개의견</p> <p>국민의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인선의 대한 검증과 대통령권의 견제를 위하여 도입된 인사청문회도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총리후보들 4명 중 4명 전부가 직무에 관한 자질평가가 아닌 개인 도덕적 사유로 인하여 낙마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 의회 정치경제위원회는 이러한 인사청문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하여서 전문성평가기준안을 작성하고 작성된 내용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내용에 포함시켜 반드시 전문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산하 각 국가기관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포함시켜서 공정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한편 입법부에서는 공직자자질평가기준안을 작성하여 공직자의 자질평가완료 기준을 제공하도록 하였다.</p>	

소 개 의 원 이환인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뤄진 주요쟁점에 대한 통계를 보면 전문성 부문은 23%인 반면 도덕성 및 개인적인 부문이 60%이나 차지함. 이러한 통계결과는 현재의 인사청문회제도법의 규정부족으로 인하여 인사의 전문성 검증의 부재가 생긴 것으로 사료됨. 또한 인사청문회 기간이 20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본래의 목적인 철저한 검증이 충실이 이행되고 있지 않음.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 국회 정치경제위원회는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하여서 전문성평가기준안을 작성하고 작성된 내용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내용에 포함시켜 반드시 전문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정부산하 각 국가기관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포함시켜서 공정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음. 한편 입법부에서는 공직자자질평가기준안을 작성하여 공직자의 자질평가완료 기준을 제공하도록 하였음. 그리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공직자자질 평가기준안의 내용을 해당 공직자가 모두 충족하였다고 사료될 때 표결에 따라 청문회를 마치도록 함.

2. 주요골자

인사청문회법 제 3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 6조와 9조와 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 2항) 명확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에 6인의 독립적인 기관의 대표자 의원석을 추가한다.

3조 7항 (신설) 정부 산하의 위원회를 대표자 선출 기관으로 선정하여 실질적 국정에 필요한 자질평가와 전문성 평가가 가능하게 한다.

3조 8항 (신설) 청문회의 자문단은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전문성평가기준안을 작성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문성평가기준안을 우선적으로 검증한다. 그 결과 해당 분야의 세부적인 업무능력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6조 2항 기간이 정해져 있어 주요안건을 모두 검증할 수 없었던 현행과 달리 청문회를 종료 할때 공직자 자질평가 기준안을 기준으로 표결결과에 따라 청문회를 종료한다.

6조 4항 (삭제) 6조 2항의 개정이유와 같다.

9조 2항 6조 2항의 개정이유와 같다.

9조 4항 (삭제) 6조 2항의 개정이유와 같다.

10조 1항 경과 보고서의 내용에 전문성, 도덕성등을 전반에 걸쳐 평가가능한 공직자 자질평가기준안과 전문성평가기준안을 포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생략)	
②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②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9인으로

한다. <개정 2003.2.4.>

(생략)

⑦(신설 조항)

⑧(신설조항)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생략)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3.2.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03.2.4, 2005.7.29, 2007.12.14>

하며 제 3조 7항에 제시되어있는 국가기관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에 포함한다.2003.2.4.>

⑦국가기관은 기관 당 3인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과 같다

1.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과학기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⑧자문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전문성평가기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자문단의 인선은 입법부가 선출하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2.자문단은 다음과 같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가. 국방자문위원단에는 군사전문가, 외교전문가, 남북통일전문가 등에서 선출한다.

나. 경제자문위원단에는 금융전문가, 세법전문가, 행정전문가 등에서 선출한다.

다. 복지자문위원단에는 인권전문가, 국민권익전문단, 양성평등전문가 등에서 선출한다.

라. 환경자문위원단에는 환경오염전문가, 생화학전문가, 생태전문가 등에서 선출한다.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생략)

②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공직자자질평가 기준안 완료표결이 가결된 시점에 인사청문을 마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03.2.4, 2005.7.29., 2007.12.14>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02.3.7, 2003.2.4, 2005.7.29, 2007.12.14>

② 생략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임명동의안등(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3.2.4>

제10조(경과보고서)

① (생략)

② 추가조항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중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심사 경과보고서로 본다. <신설 2003.2.4>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공직자자질평가기준안 완료 표결이 가결된 시점까지를 인사청문 활동기간으로 지정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임명동의안등(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3.2.4>

제10조(경과보고서)

① (생략)

② 경과보고서는 자문단의 전문성평가기준안 및 공직자자질평가기준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중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심사 경과보고서로 본다. <신설 2003.2.4>

--	--

청원인 성명 : 이환인

청원인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청원인 전화번호 :